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9. 23 선고 2019가합59006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청구 등의
소]

전 문

원고A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병주

주위적피고1. B

2. C

3. D

예비적피고E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변론 종결2020. 8. 19.

판결 선고2020. 9. 23.

주 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에 해당하는 재건축아파트를 분양받을

E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 지위에 관하여 망 F의 2015. 3. 25.자 유증을 원인으로
조합원명의변경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 위 적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1)

예 비 적 청 구 취 지

피고 B, C, D(피고들)는 원고에게, 망 F의 2015. 3. 25.자 유증을 원인으로, 망 F와 피고 E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예비적 피고) 사이에 체결 된 2017. 7. 12.자 신탁계약 따른 수익권을 양도하고, 피고 E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예비적 피고)은 위 수익권 양도를 승낙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 (1) 원고는 망 F(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배우자이고, 피고 B, C은 망인과 망인의 전 배우자인 G 사이의 자녀들이며, 피고 D는 망인과 원고 사이의 자녀이다.
- (2) 망인은 2019. 5. 26. 사망하였고,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와 망인의 자녀들인 피고들이 망인의 재산을 상속하였다.
- (3) 예비적 피고(이하 '피고 조합'이라 한다)는 서울 강남구 H 외 7필지 일원 179,794.9m² 소재 E아파트에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정비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2013. 11. 21.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다.

나. 망인과 피고 조합 사이의 신탁계약

- (1) 망인은 2010. 5. 26. 별지1 목록 기재 아파트(서울 강남구 H에 있는 E아파트 I호, 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2010. 5. 26.자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 (2) 망인은 2017. 7. 12. 피고 조합과 사이에, 망인이 피고 조합의 조합원으로서 피고 조합에 이 사건

아파트를 신탁하고 피고 조합은 이 사건 아파트를 수탁하여 이 사건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내용 등의 신탁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 조합은 2018. 1. 31.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2017. 7. 12.자 신탁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이 사건 아파트는 이 사건 정비사업의 시행에 따라 철거되어 2019. 1. 30. 멸실되었고 현재 이 사건 아파트의 대지 지분에 관하여 피고 조합 명의의 신탁등기가 마쳐져 있다.

다. 망인의 유언증서에 대한 검인

원고는 망인의 사망 이후인 2019. 7. 15. 서울가정법원에 유언의 증서 또는 녹음의 검인을 신청하여 2019. 10. 17. 위 법원에서 검인을 받았는데(서울가정법원 2019느단52551호), 검인의 대상이 된 유언증서는 망인 명의의 2015. 3. 25.자 유언장(이하 '이 사건 유언장'이라 한다)으로서 별지2와 같고, 이 사건 유언장에는 아래와 같이 유언사항, 작성인(망인)의 성명·생년월일·주소, 배우자(원고)의 성명·생년월일·주소가 기재되어 있으며, 하단에는 작성일자와 작성자(망인)의 성명과 서명, 무인이 찍혀있다.

유언장

본인 F 유고시 아래 주소지의 부동산과 예금통장 및 해외여행시 재해로 인한 보상비 전액을 본인의 처 A에게 상속하며 본 유언장은 본인이 작성하였으며 자필로 서명한다.

1. 부동산 : 서울시 강남구 H에 있는 E아파트 I호
2. 예금통장 : MG 새마을금고(정기예탁금) 계좌번호 J
3. 해외여행자보험(해외에서 재해로 인하여 유고한 때)

작성인 : F

생년월일 : K

주소 : 서울시 강남구 L아파트 M호

처: A

생년월일 : N

주소 : 서울시 강남구 L아파트 M호

2015. 3. 25.

본인 F(서명, 무인)

[인정근거 : 갑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원인에 관하여

가. 이 사건 유언장에 유언 전문과 연월일, 망인의 주소, 성명이 작성자의 자필로 기재되어 있고 하단부 망인의 성명 옆에 망인의 서명과 무인이 찍혀있으므로, 망인의 이 사건 유언장에 의한 유언은 민법 제1066조 제1항에서 정한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으로서의 법정요건을 갖춘 것으로 유효하고, 망인은 이 사건 유언장에서 별도로 유언집행자를 지정하거나 지정위탁을 하지 않았으므로 상속인인 원고와 피고들이 유언집행자가 되며(민법 제1095조), 유언집행자인 원고가 다른 유언집행자들인 피고들을 상대로 유증의무의 이행을 구하는 것은 유언집행자 전원을 피고로 하는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에 해당한다(대법원 2011. 6. 24. 선고 2009다8345 판결 참조).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인은 생전에 피고 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이 사건 정비사업을 위하여 피고 조합과 사이에 신탁계약을 체결하여 피고 조합에 이 사건 아파트를 신탁하였고, 이 사건 아파트는 이 사건 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 멸실되었는데, 망인이 이 사건 유언장에 의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유증하였으므로, 망인의 사망으로 인한 피고 조합의 조합원의 지위는 이 사건 아파트를 유증받은 원고에게 승계되어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망인의 상속인으로서 유언집행자에 해당하는 피고들은 다른 유언집행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해당하는 재건축아파트를 분양받을 피고 조합의 조합원 지위에 관하여 망인의 2015. 3. 25.자 유증을 원인으로 조합원명의변경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인용하므로, 피고 조합에 대한 청구가 포함된 예비적 청구에 관하여는 따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민성철

판사천무환

판사강면구

별지

F의 2015. 3. 25.자 유증을 원인으로 하여, 피고 E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에 대한 망 F의 조합원 지위를 승계하라"로 변경하였으나, 주문과 같이 선해한다.